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 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94 발의연월일: 2022. 9. 16.

발 의 자:전용기·김수흥·김영배

김홍걸 • 박광온 • 박성준

신정훈 • 이병훈 • 이성만

이원욱 • 최혜영 • 한병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에 대한 학교 파업' 시위를 시작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미래세대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들도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비가역적인 위험과 영향을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기후불평등 피해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유의미한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있음.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힘든 구조임. 국가·지역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하기 어렵고, 기본계획의 수립과 상황점검 과정에 미래세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있는 창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미래세대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 5조 및 제22조).

법률 제 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청년"을 "아동, 청년"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 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2050탄소중립녹색성 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원회의 설치) ① ~ ④ (생 략)	원회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⑤
위촉할 때에는 <u>청년</u> , 여성, 노동	<u>아동, 청년</u>
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	
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	
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	
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
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③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u><후단 신설></u>	<u>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u>
	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
	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
	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
	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u>한다.</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